연구보안관리지침

2024년 10월 31일

연구윤리보안센터

연구보안관리지침

2024.10.31.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44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한 보안대책으로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중앙행정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3. “전문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4. “주관연구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연구책임자”란 연구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실제 연구를 진행하고 주관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7. “연구개발성과”란 연구개발성과 중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 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법률에 의하여 지식재산으로 보호되는 모든 성과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대상 및 범위는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전 기관과 교직원, 각종 계약에 의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직원 또는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관련되거나 접근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2장 연구보안관리 체계

제4조(연구보안심의위원회 기능)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른 연구보안심의회(이하 “보안심의회” 라 한다)의 역할을 수행한다.

② 보안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보안대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에 관한 자체점검 결과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방안에 관한 사항
4. 외국 연구자 등의 보안과제 참여 및 외국정부 등과의 보안과제 관련 접촉 관리에 관한 사항
5.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계획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과제 보안대책을 위반한 연구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
7. 보안과제 참여연구자에 대한 보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보안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연구보안관리 담당)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보안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은 산학협력단이 관장하며, 효과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연구윤리보안센터를 연구보안담당부서로 정한다.

② 연구윤리보안센터장을 연구보안책임자로 하며 보안총괄관리를 수행한다. 단, 개별 보안관리 사항이 특수 분야의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술과 관련된 부서에서 수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개별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는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담당한다.

④ 위원장은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하여 보안수당 지급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장 보안 조치

제6조(참여연구원에 대한 조치)

연구책임자는 첨단기술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참여연구원 및 참여기관 등에 대한 보안조치를 다음 각 호 및 **[별지1]**보안관리 조치사항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안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1. 연구개발성과 유출 혐의(전력)자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안심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은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3.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이 당해 연구와 관련하여 외국인을 접촉하였을 경우에는 **[별지6]**참여연구원 외국인 접촉보고서를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4.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이 퇴직(예정) 시는 **[별지4]**퇴직보안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반출(예상)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및 연구개발결과물 회수, 전산망 접속차단 등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실별 보안현황 관리)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을 연 1회 조사하고, 이를 종합하여 연구보안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8조(중요시설물 보호구역 및 출입통제)

① 연구책임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보안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과제 참여자 외 접근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 수행 시 출입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10]**출입기록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③ 보안과제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인원의 출입 및 방문을 통제하여야 하며 외부방문자 출입 시 연구보안책임자의 사전허가를 받은 후 보안담당자가 방문자와 함께 방문지역을 통행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시설 관리)

연구보안담당부서는 보안과제가 수행되는 연구시설의 보안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보안과제 수행에 사용된 노트북,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출입관리

2. 연구개발기관 외곽, 주요 시설물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침입감지센터 등 장비 등의 설치·운용

3.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핵심기술 및 정보를 보관하는 전산실 및 중요시설물에 대한 보안관리 조치

4. 연구실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출입권한 차등화 기준, 출입현황 관리

5. 외부인 및 외부입주기관(벤처기업 포함)의 보안과제 관련 연구시설의 내부 출입통제 조치

6. 화재, 홍수, 재난, 재해 등 비상시 대응계획 수립

제10조(연구문서 및 자료의 관리)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 보안 등급을 표기하고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산출물의 경우 잠금장치가 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과 관련된 문서, 도면, 연구노트, 장비 등의 취급에 신중을 가하여야 하며 연구과제 참여자 외 직접 관련없는 자에게 문서의 열람, 대여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 자료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승인 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허가된 자 이외의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하며 열람자에 대한 **[별지11]**열람기록전을 비치 작성토록 하여야 한다.

④ 연구책임자는 연구성과물에 대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할 수량 외의 추가 발행을 할 수 없으며 다만, 불가피하게 연구성과물을 외부로 배포하기 위하여 추가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보안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연구계약기간 만료 시 보안조치)

연구책임자는 연구보안과제의 계약기간 만료 시 연구활동 중 취득한 기밀 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각종 연구자료, 연구성과물 및 연구노트 회수

2. 과제수행 중 취득한 연구기밀에 대한 보안유지 의무사항 고지

3.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징구

제12조(통신기기 등의 활용에 대한 보안조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는 휴대용 정보통신기기, 이메일 등 인터넷서비스 활용 등과 관련된 보안조치로 **[별지1]**보안관리 조치사항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공동, 위탁연구 시 보안조치)

보안과제는 제3자와 위탁·공동 연구를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탁·공동 연구를 수행할 경우, 사전에 수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위탁·공동 계약 전에 연구윤리보안센터에 통보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구원 중 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 수시보안점검 등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3. 과제 참여자에 대해 보안규정준수에 대한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14조(개인별, 부서별 보안수칙)

한양대학교와 그 부설기관의 모든 구성원은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업무상 지득한 기밀 및 중요사항 누설 금지

2. 업무용 자료의 무단 반출·공개·제공 금지

3. 보안사고 유발 또는 인지 즉시 연구윤리보안센터에 신고

4. 출입증 분실한 경우 즉시 발급부서에 신고

5. 연구보안책임자로부터 사전 검토 및 승인 후 저장매체의 폐기 및 외부이관

6. 업무용 PC로그인 암호 및 화면보호기능 설정

7. 내방객의 사무실 출입 최대한 제한, 가급적 면회실 등 지정장소 이용

8. 민감정보가 담긴 서류의 이면지 활용 금지, 문서파쇄기를 이용하여 완전 폐기

9. 해외 출장·여행 중 유의하거나 지켜야 할 보안행동수칙 준수

10. 기타 보안관계 법력 및 연구보안책임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15조(외국기업 및 외국인 등에 대한 보안조치)

보안과제의 첨단기술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인 및 외국기업 등에 대한 보안조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지 아니한 외국기업 또는 국외 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과제의 공동·위탁연구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외국인 연구원의 보안과제 참여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7]**연구참여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산학협력단장 및 연구책임자는 영문보안서약서 작성, 범죄기록 증명원 제출, 출입지역 제한, 특이 동향 관리 등 외국인 연구원에 대한 별도의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보안과제에 외국인을 참여시킨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보안대책」 제9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연구정보의 국외 유출방지 보안대책)

① 연구보안책임자는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요 연구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지1]**보안관리 조치사항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보안책임자는 연구원이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외국 정부·기관 또는 단체를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을 경우에는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방문 일시·장소 및 주요 방문내용 등의 사항을 문서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알려야한다.

제17조(해외 기술이전 시 보안조치)

연구개발결과 해외기술이전(양도) 추진 시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및 제11조2(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 등)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외국정부 등과의 접촉 관리 등)

① 보안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연구자가 외국에 소재한 정부·기관·단체 또는 외국인 등과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접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촉 일시·장소·방법·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안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연구자가 외국 정부·기관·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사전에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 제2항에 따라 사전 승인한 사항을 보고 및 승인 후 1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 통보한다.

제19조(해외출장 시 보안 관리)

①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이 해외 출장 시 해외출장관련 연구보안 유의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② 해외출장 중에 발표하거나 공개해야 할 연구자료 내용에 대해 **[별지8]**사전보안성 체크리스트를 통해 연구책임자로부터 사전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해외출장 후에는 해외출장에서 입수한 정보통신저장매체에 대해 보안성 검토를 실시 해야한다.

제20조(보안교육)

① 보안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직원 및 연구원, 과제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연구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이 지침에 따른 연구자의 의무 사항
2. 연구보안관리규정에 따른 연구자의 의무 사항
3.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법,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안사고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연구자는 산학협력단장에게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안서약서의 서식은 **[별지5]**를 따르며, 필요한 경우 산학협력단장이 그 내용을 준용하여 정할 수 있다.

제21조(보안서약)

산학협력단장은 아래 각 호를 대상으로 업무상 지득한 기밀의 누설금지, 보안위반시 법적책임 등을 명시한 보안서약을 집행한다.

1. 산학협력단 신규임용자 및 퇴직자

2. 비밀 암호자재취급인가 예정자

3. 연구개발사업 수행 연구자(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4. 용역사업 수행자(대표 및 종사자), 유지보수업무 종사자

5. 기타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제22조(보안감사, 진단, 점검 등)

① 연구보안책임자는 보안관리 역량 제고 및 보안의식 고취, 보안사고 예방 등을 위해 과제별 연구보안담당자와 합동 또는 단독에 의한 자체 보안감사를 시행한다.

② 연구보안책임자는 비밀소유 및 비밀 암호자재취급인가자현황, 통제구역 출입자현황, 신원특이자 포함 인원현황, 기타 보안특이사항 파악 등을 위해 보안진단을 시행한다.

③ 연구보안책임자는 분야별 보안담당부서와 협조하여 보안관리 조치사항 이행실태 점검, 보안 취약점 탐지 및 개선조치를 위해 불시 보안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거나 감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연구개발과제 보안사고 처리

제23조(보안사고 대응)

① 산학협력단장은 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별지3]**보안사고 대응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정보의 유출, 누설, 분실 또는 도난

2. 정보시스템실 또는 정보통신망 무단 침입

3. 정보를 유통·관리·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 변조, 손괴 또는 파괴

4. 정보시스템실의 화재, 재난 또는 도난

5. 바이러스 피해 또는 비밀번호의 유출

6. 기타 기관 보안에 위협 요소 또는 위원장이 정하는 보안 관련 사고

② 제1항의 보안사고 내용을 반영하여 보안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24조(보안사고에 대한 책임)

① 연구과제 참여자는 대학의 보안, 안전 및 기타 관계규정을 준수하고 기강 유지에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연구과제 참여 중 대학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참여연구원의 실수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서는 대학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③ 참여연구원 및 연구 관련 부서 담당자 등은 연구기간 중은 물론 연구종료 후에도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25조(보안위규.우수자 상벌조치)

① 산학협력단장은 정부부처 보안감사·평가, 대학 자체 보안감사·점검 등에서 보안위규자로 지적된 자에 대해 계도 및 재발방지 등을 위해 **[별지2]**위규자 처리기준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

② 보안우수자에 대하여는 인사고과, 승진, 포상, 교육훈련 등에 그 정상을 적극 참작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보안관리 조치사항

1. 보안관리 체계

해당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모든과제	1. 연구보안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기관 보안관리 실정을 반영한 자체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개정	◯	
모든과제	2.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와 관련한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연구보안심의회 운영	◯	
모든과제	3. 연구과제 보안관리 업무의 종합계획·관리를 담당하는 보안관리책임자 및 보안 업무 전담직원 지정·배치	◯	
모든과제	4.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부서 및 연구 인력에 대한 보안 관련 규정 교육·홍보 실시	◯	
모든과제	5.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 보안 우수자 및 규정 위반자에 대한 상벌 조치 명시	◯	
모든과제	6. 보안사고 예방·조치·대응 등 재발 방지책 마련	◯	
모든과제	7. 연구기관 및 연구원에 대한 정기 수시 보안점검 및 교육 실시	◯	
모든과제	8. 화재, 홍수, 재난, 재해 등 비상시 대응계획 수립	◯	
보안과제	9. 외국기업 및 국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 위탁연구 시 중앙행정기관의 사전 승인 절차 이행	◯	

[별지 제1호] 보안관리 조치사항

2. 참여연구원 관리

해당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모든과제	1. 참여연구원(외국인 포함)의 채용·갱신·퇴직 시 고용계약서 및 보안서약서를 받고, 이 경우 연구과제 보안관리 의무 및 그 위반 시의 제재 등을 명시	◯	◯
모든과제	2. 연구과제 수행 연구원의 보안의식을 높이기 위한 보안 관련 교육 이수		◯
모든과제	3. 퇴직(예정)자의 반출(예상)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연구성과물 회수, 전산망 접속 차단 등의 조치	◯	
모든과제	4. 외부기관 파견자 등 임시직 및 방문자에 대한 별도 보안조치	◯	◯
모든과제	5. 연구성과 유출 혐의(전력)자가 과제에 참여할 경우 특별관리조치	◯	
모든과제	6. 참여연구원의 국외 출장 시 사전 보안교육 및 귀국보고(출장기간에 접촉한 사람 및 협의 내용 등을 포함한다) 실시	◯	◯
보안과제	7. 외국인 연구원의 별도 보안조치(영문 보안서약서 작성, 출입지역 제한, 반출·반입 물품 제한, 특이 동향 관리 등)	◯	
보안과제	8. 보안과제 참여연구원이 과제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외국인 현황 관리	◯	◯
보안과제	9. 외국인 연구원이 보안과제 참여 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절차 이행		◯

[별지 제1호] 보안관리 조치사항

3. 연구개발 내용 및 성과의 관리

해당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모든과제	1.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 보안등급 표기		○
모든과제	2. 연구수행 단계별 특허권·지식재산권 확보 방안과 주요 연구자료 및 성과물의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책 마련·시행	○	○
모든과제	3. 연구개발 성과의 대외 공개(홈페이지 게재 포함) 및 제공 시, 연구책임자의 사전 보안성 검토 확인절차 이행	○	○
모든과제	4. 연구개발 성과의 해외 기술이전(양도) 추진 시 관계법령 준수	○	
모든과제	5. 연구개발성과 활용 시 국내에 있는 자를 계약체결 대상으로 우선 고려	○	
보안과제	6. 외부 기관과 보안과제의 공동(협동 위탁 포함)연구 협약 시 성과물의 귀속, 자료 제공 및 장비 반납 등에 관한 사전 보안대책 마련 및 적용	○	○
보안과제	7. 연구성과물 기술 실시(사용) 계약 시 “제3자 기술 실시(사용)권 금지협약” 체결	○	

4. 연구시설 관리

해당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모든과제	1. 노트북,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반입·출입 절차 마련 및 이행	○	○
모든과제	2. 외곽, 주요 시설물에 폐쇠회로 텔레비전, 침입감지센서 등 첨단장비의 설치·운용	○	
모든과제	3.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핵심기술 및 정보를 보관하는 전산실 및 중요시설물에 대해서 보호구역 지정 후 특별 보안관리 조치	○	
모든과제	4. 외부 입주기관(벤처기업 포함)의 연구시설 내부 출입통제 조치	○	
보안과제	5. 연구시설 출입자에 대한 개인별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통제	○	
보안과제	6. 외부방문자 출입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허가 후에 담당 직원이 방문자와 함께 방문지역 동행	○	○

[별지 제1호] 보안관리 조치사항

5. 정보통신망 관리

해당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모든과제	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을 목적으로 전산망 보호를 위한 방화벽 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 각종 장비의 설치·운영	◯	
모든과제	2. 외부에서 내부망 접속 시 사용자 인증으로 정보시스템 접근 제한 조치	◯	
모든과제	3. 컴퓨터에 각종 장비 및 소프트웨어 설치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모든과제	4. 무선통신망 구축 시 비인가 사용자의 차단을 위한 사용자 인증, 암호화 통신, 암호화 키의 주기적 변경 등 보안조치	◯	
모든과제	5. 사전에 소속 기관에서 인가받은 보안 이동형 저장매체 사용	◯	◯
모든과제	6. 보안시스템 안전사고에 대비 데이터 백업시스템 구축·운영 및 원거리 지역 보안시설에 중요 데이터 별도 복사본 보관	◯	
모든과제	7. 비인가 개인용 정보통신매체 반입·출입 통제 및 내부망 연결 제한	◯	◯
모든과제	8. 업무용 컴퓨터 대상 보안 소프트웨어, 보안패치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
모든과제	9. 보안사고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기록(최소 6개월 이상)보관 - 보관 권장기간 : 1년	◯	
모든과제	10. 직책, 업무에 따라 각종 전산 자료에 대한 차등적 접근권한 부여	◯	
모든과제	11. 네트워크 자료(시스템 구성, IP현황 등)의 보안관리	◯	
모든과제	12. 전산장비 폐기 및 외부 이관 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에 저장된 주요 자료가 불법으로 복구되지 않도록 조치	◯	◯
보안과제	13. 내부망의 연구실별 물리적 또는 논리적(방화벽 등) 분리	◯	◯
보안과제	14. 업무용 컴퓨터 자료를 휴대전화, 이동형 저장매체 등 개인용 정보통신매체에 복사·저장·전송할 경우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보안과제	15. 인터넷을 이용하여 외부로 자료 전송 시, 승인 절차 등 보안대책 마련 및 이행	◯	◯
보안과제	16. 메신저, 인터넷 저장소, 외부 이메일 등 자료 유출 가능 경로 접속차단	◯	

[별지 제2호] 보안위규자 처리기준

<table>
<tr><th colspan="2">보 안 위 규 자 처 리 기 준</th></tr>
<tr><td colspan="2">위규사항</td></tr>
<tr><td>일반
보안</td><td>[경미한 사항]
▸업무용 자료 관리소홀, 서류함/사무실 보안관리 소홀
▸연구보안관리 지침 제14조 ‘개인별.부서별 보안수칙’ 중 경미한 사항 위반
[중대한 사항]
▸비밀/대외비 분실 또는 무단유출, 비밀보관함 도난
▸중요 정책자료 및 개인신상정보 무단유출 또는 분실, 임의제공
▸연구보안관리 지침 제14조 ‘개인별.부서별 보안수칙’ 중 중대한 사항 위반
※ 사고의 원인과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 피해정도 등을 두루 감안하여 경중 판단</td></tr>
<tr><td>정보
보안</td><td>▸‘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서 정한 정보보안위규사항 및 정보보안사고 발생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등에서 정한 사이버공격 및 정보보안침해사고 발생
▸‘정보보호 규정‘에서 정한 정보통신망 오·남용 발생 및 보안의무 미이행
▸기타 사용자 과실의 정보보안사고 발생</td></tr>
<tr><td>연구
보안</td><td>▸‘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 정한 연구보안사고 발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 미이행</td></tr>
<tr><td>개인
정보</td><td>▸개인정보보호법 위반</td></tr>
<tr><td colspan="2">보안위규자 처리절차</td></tr>
<tr><td colspan="2">[경미한 사항]
① 연구보안책임자에 의한 사고조사
② 사고유발자 및 그 부서장에게 주의사항 발송
③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보안교육 시행

[중대한 사항]
① 연구보안책임자 및 해당분야 보안담당자에 의한 사고조사
② 산학협력단장 보고
③ 연구보안심의회 심의
④ 인사위원회(교원/직원/학생) 회부
⑤ 징계 등 조치
⑥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보안교육 시행
※ 정부부처 보고는 관계법령 및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바대로 시의적절하게 처리</td></tr>
</table>

[별지 제3호] 보안사고 대응절차

보안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주관부서	연구윤리보안센터	담당자	연구보안책임자

1. 사고탐지 및 신고	2. 대응	3. 사후조치
① 사고 탐지/사고당사자 신고 -연구윤리보안센터 신고 **② 관련 부서 신고** -연구보안: 연구지원팀 -일반보안: 관리처 -정보보안: 정보통신처 **③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 **④ 관련 기관 보고**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연구개발과제 관련 중앙행정기관 *5일 이내 상세 내용 추가 보고(연구보안사고 발생 일시와 장소, 사고자의 인적사항과 사고 발생원인 및 내용, 사고 발생 시 조치 사항 등)	**① 보안사고 대응팀 구성** -연구보안책임자(연구윤리보안센터장) -정보보안책임자(정보통신처장) -일반보안책임자(관리처장) -보안사고 발생 부서장 **② 자체 경위조사 및 현황 파악** -증거자료 수집(보안사고 당사자 , 보안사고 대상, 피해규모 확인) -보안사고 분석 *필요시 국정원 등 외부수사기관과 협조 **③ 조사보고서 작성** **④ 조사결과 총장 보고** **⑤ 연구보안심의위원회 개최** -보안사고 조치사항 및 재발방지대책 논의 -징계 여부 및 수위 결정 **⑥ 보안사고 복구 및 해결**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안사고 심의결과 통보** -조치결과 및 향후 재발방지 대책 보고 **② 보안사고 관련자 처벌** -징계위원회 소집 -징계조치 시행 -장계결과 공지 **③ 재발방지대책 시행** -연구보안 교육 반영 -규정 및 지침 제·개정 -연구보안 실태점검 계획 -모의훈련 시행 계획

[별지 제4호] 퇴직보안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퇴직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것은 물론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지체없이 변상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근무 중 지득한 국가보안 등에 관한 제반 비밀과 직무상 지득한 과학기술정보 관련 제반 비밀사항 및 중요 기술비밀을 관련법령에 따라 일제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않는다.

2.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근무 중의 모든 발명, 고안, 장착 및 발견 등에 대하여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또는 그 지정인에게 이를 공개, 양도할 것에 동의하고 그 절차에 적극 협력한다,

3.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근무 중의 모든 연구자료 및 연구결과보고서, 설계서, 청사진 등과 보조기억장치 등에 대하여는 누락 없이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또는 그 지정인에게 인계하고 이를 소지하거나 유출하지 않는다.

4. 퇴직 후 2년간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사전승인없이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과 직무발명, 고안, 창작 및 발견사항 등의 지적재산권을 이용하여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창업하거나, 기업체에 전직, 동업 또는 자문하지 않는다.

5.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국가보안법, 형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성명	(서명)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5호] 보안서약서(연구자용)

보안 서약서
Security Pledge

지원기관 Support Organization			
과제명 Research Project			
연구책임자 Principal Investigator		연구기간 Term of Research	

본인은 연구과제 개발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I hereby pledge to comply with the following in the course of my participation in the research project.

1. 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과제 수행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허락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1. Any research information acquired during the course of this research project shall not be used, either during or after the research project, for myself or a third party without permission from the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Foundation of Hanyang University.

2. 본 연구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2. Even if the outcomes of this research project has been disclosed in a legitimate manner, I am obligated to maintain confidentiality as above regarding any undisclosed information.

3. 본 연구과제가 완료되거나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즉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밀을 포함한 관련자료를 연구보안관리자에게 반납하며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3. Once this research project is completed or can no longer be conducted, I will immediately return to the research security administrator any related materials, including any research secrets, under my possession at the point in time concerned and I will be obligated to maintain confidentiality as above.

4. 본 연구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보안업무규정 등 제반규정을 준수한다.
4. I will comply with other information protection regulations of the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Foundation of Hanyang University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this research project.

본인은 위의 사항을 숙지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 법령 및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규정에 따라 일체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I hereby pledge to understand and faithfully comply with the above. I am aware that I will be held fully liable for noncompliance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the regulations of the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Foundation of Hanyang University.

연번 No	소속 Affiliation	구분[1)] Type	학번/직번 (과학기술인번호 NTIS Researcher No.)	성명 Name	서명 Signature
1					
2					
3					
4					
5					
6					
7					

[1)] 구분 Type: ① 연구책임자 Principal Investigator, ② 참여연구원 Participating Researcher

년(YYYY) 월(MM) 일(DD)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To The Head of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Foundation of Hanyang University

[별지 제5호] 보안서약서(직원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연구보안관계 법령 및 자체규정에 따라 과제 수행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보안을 준수하겠습니다.
2. 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과제 수행중은 물론이고 종료 후에도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허락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3. 본 연구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4. 본 연구과제가 완료되거나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연구책임자에게 반납하여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5. 위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제법규에 의한 처벌을 받을 것임과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성명	(서명)
	직위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5호] 보안서약서(용역직원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의 (　　)을 수행하는
(　　) 소속 임.직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본인은 (　　)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일체의 업무정보와 기밀사항을 절대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　　)를 수행하는 중 및 용역사업 종료 후에도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이 만약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업무정보와 기밀사항을 누설하였거나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 및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규정 등에 따라 주어지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　　약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6호] 참여연구원 외국인 접촉보고서

참여연구원 외국인 접촉 보고서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

□ **연구과제정보 및 대상자 정보**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연락처**	
접촉 참여연구원		**접촉 참여연구원 연락처**	

□ **외국인 접촉 대상자 정보**

성명(대표자)		**국가(국적)**	
기관.단체명		**연락처**	
주소(소재지)			

□ **접촉정보**

접촉일시	2000.00.00. ~ 2000.00.00.		
접촉장소		**연락처**	
접촉유형	□방문 (□출장 □기타) / □피방문 (기타 사유:)		
	□공식 / □비공식		
접촉목적 및 내용			

상기와 같이 참여연구원의 외국인 접촉 내용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서명/인)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7호] 연구참여승인신청서

외국인(외국기업)연구 참여 승인신청서

□ 연구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연구과제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 외국인 연구참여자

소속		국적	
성명		직위	
연락처	Tel :	E-mail :	
연구과제 수행역할			

□ 위 외국인이 보안연구과제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는 사유

○ 해당 참여연구원의 보안과제 기여 가능성 ○ 참여 외국인의 국적과 우리나라 간 기술격차와 기술유출 가능성 ○ 기타 사유

위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인이 보안연구과제에 참여하게 되었으므로 위 외국인 연구참여자에게 국가기술개발과제 수행과정상의 보안관리 지침을 숙지 및 준수토록 할 것을 다짐하며, 위 해당자의 출입지역 및 열람가능 자료를 제한하고 특이동향 인지시 그 내용을 보고할 것을 서약하오니, 위 외국인의 연구과제 참여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서명/인)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8호] 사전보안성 검토 체크리스트

사전보안성 체크리스트

□ **공개자료명 :**

□ **공개대상기관 :**

□ **공개 일자 :**

항목	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기준	점검 결과	
		예	아니오
1	대외 공개 시 국가방위 상 막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적 또는 가상 적국에서 유리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는 과학기술에 관한 사항인가?	√	
2	대외 공개 시 비밀에 속하지 않으나, 군수업체 보호 목적상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산업정보에 관한 사항인가?		
3	대외 공개자료가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가?		
4	대외 공개자료의 범위가 핵심기술의 상세한 내용까지 기술하고 있는가?		
5	미래의 기술적, 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연구내용과 관련한 사항인가?		
6	현재 진행 중인 연구가 기술상용화 단계에 해당하여 연구내용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인가?		
7	대외 공개자료의 내용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되는가? ※ 국가핵심기술 :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술		
8	대외 공개자료의 내용이 소속기관의 중요한 경제적 자산이 되거나, 누설 시 소속기관에 유, 무형의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연구내용인가?		

최종 점검 결과 :

본인은 위 모든 사항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서명/인)

[별지 제9호] 보안조치 사항 체크리스트

보안점검 체크리스트(참여연구자)

구분	점검사항	점검 결과	
		우수	미흡
1	보안서약서 작성	√	
2	연구보안교육 이수여부		
3	퇴직(예정)자, 전출(예정)자, 국외출장(예정)자 특별보안교육 이수여부		
4	퇴직 전 연구책임자에게 연구성과물 반납 및 보안성 검토 실시		
5	국외 출장 후 귀국보고 및 외국 정부·기관·단체 접촉현황 보고		
6	국외 출장 시 반출매체, 반출자료내용, 보안성 검토 기입		
7	연구자료 대외공개 전 연구책임자로부터 사전 보안성 검토 실시		
8	연구자료를 관계기관에 송부 시, 파일 암호화 조치 및 수신인에 연구책임자 포함		
9	정보통신매체 사용 전 사전 사용신청인가절차 및 사용목록 작성		
10	정보통신매체 외부 반·출입 시 연구책임자로부터 사전 승인을 득하고 외부 반·출입 목록 작성		
11	사용하는 컴퓨터에 대해 보안 소프트웨어 지속 업데이트		
12	회의 진행 시, 보안과제 참여연구자끼리만 별도 공간에서 회의 진행		
13	메신저 등 불필요 매체 미사용		
14	보안과제 파일에 대한 암호화 조치		
15	연구노트 작성 및 보관(캐비닛 시건장치)		
16	외부인원 출입 시. 출입절차 준수 및 출입대장 기록		

최종 점검 결과 :

[별지 제10호] 통제구역 출입기록부

통제·제한구역 출입대장

☐ 통제구역명 :　　☐ 관리책임자 :

일자	출입시간		출입자			확인자			비고
	입	출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24.01.01	10:30	12:00							

[별지 제11호] 비밀자료 열람기록전

비밀자료 열람기록전

☐ **제목 :**

일자	소속/직책	성명	인가등급	열람목적	서명
24.01.01					